

3.1.8 서비스 중단

3.1.8.1 고객의 서비스 중단 요청

고객의 서면 요청 시 연중 내내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며, 단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용 계정에 제공한 서비스가 최신 상태이며 서비스 중단 요청 당시 비용이 전액 납부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중단에 대한 서면 요청은 지역구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중단 요청 양식을 통해 해야 하며 다른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단을 요청한 부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도 계량기는 해당 부지에서 제거되며 해당 부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도관의 수도 서비스는 차단됩니다. 서비스 중단 요청 이후 서비스 복구 또는 갱신 전에 5/8" x 3/4" 계량기, 전체 3/4" 계량기 또는 1" 계량기에 대한 복구 또는 재연결 요금인 \$275.00가 부과 및 징수됩니다.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2006년 6월 20일 결의안 353으로 수정.)

3.1.8.2 청구 미납

(a) 아래 하위 섹션 (b), (c) 및 (d)에 따라 청구 납부일 또는 그 이전 60일 내에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수도 서비스 복구 전에 미납에 대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90.00의 연체 금액이 부과되어 수도 청구액에 가산 및 징수됩니다. 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납부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지역구에 대한 채무로 간주되며 모든 개인, 회사 또는 기업이 ~~채무~~ 채무의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당 금액에 대해 모든 관할구 법원에서 지역구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 미납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지역구에서는 고객에게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제안해야 합니다.

-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미납 금액의 분할 상환.
- 대체 납부 일정 참여.
- 다른 납세자에 대한 가산 요금 없이 조달한 미납 금액의 부분 또는 전체 삭감.
- 임시 납부 연기.

(c) 고객이 연체 요금에 대한 대체 납부 조정에 60일 이상 준수하지 못할 경우 또는 대체 납부 조정을 실행하는 도중에 고객이 본인의 현재 주거 서비스 요금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역구에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d)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객의 요금 미납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

- 면허 소지 1차 의료 제공자가 수도 서비스의 중단이 거주민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의 특정 공공 지원금(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금, MediCal, 생활 보조금/주 정부 보충 납부 프로그램, 여성 및 영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 수령 또는 해당 가구가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는 고객의 신고서에 따라 고객의 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이 납부가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고객이 대체 납부 조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경우.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2006년 3월 28일 결의안 350으로 수정, 2020년 1월 21일 결의안 457로 수정.)

3.1.8.3 10일 전 고지 및 이의 제기 권리

지역구에서는 수도 청구액 미납으로 인한 고객의 수도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우송료 선납 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해 수도 서비스를 청구한 고객에게 이를 알립니다. 이러한 통지는 지역구의 서비스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9일 이내에 발송하면 안 되며 10일 기간은 통지발송 이후 5일 전까지 개시되지 않습니다. 발송된 통지는 다음 정보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 (a) 미납 계정을 소유한 고객의 이름 및 주소
- (b) 미납 금액.
- (c) 수도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납부일 또는 납부 조정일.
- (d)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서비스 또는 요금과 관련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 (e) 고객이 미납 요금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 (f) 고객이 시적, 지역, 주 또는 연방 납부원을 비롯해 재정 지원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
- (g) 납부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기관 조정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구 담당자의 전화번호.

지역구에서 7일 통지를 제공할(섹션 3.1.8.4에 따라 의무화) 기간 이전에 납부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문고리 통지와 \$15.00의 연체 요금 또는 고객 수도 청구서 미납 금액의 7% 중 더 높은 금액에 대한 연체 요금이 계정에 가산됩니다. 이러한 문고리 통지 및 연체 요금이 청구서에 가산되는 날짜와 요금의 전체 금액은 발송되는 통지에 포함됩니다. 고객이 서비스 중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구 일반 관리자 또는 그 지명인이 주재하는 공청회에서 서비스 중단 전에 이의 제기 권리가 주어집니다.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2006년 3월 28일 350, March 28, 2006; amended by Res. 결의안 457로 수정.)

3.1.8.4 7일 통지

지역구에서는 고객 수도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고객 부지의 성인 거주자에게 전화로 또는 직접 대면하여 연락할 합리적인 선의의 노력을 다합니다. 7일 통지에는 위 섹션 3.1.8.3 (a), (b), (c), (f) 및 (g)에 있는 항목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2020년 1월 21일 결의안 457로 수정)

3.1.8.5 정규 업무 시간

납부금은 지역구 사무소의 정규 업무 시간 내에 미 우정청을 통해 또는 지역구 사무소의 운영 시간 외 납부금을 위한 우편함을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직원은 현장에서 납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지역구 사무소와 사전 조정이 되지 않은 이상 수도 서비스는 정규 업무 시간 중에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3.1.8.6 소송을 통한 징수

여기에 설명된 전체 미납 요금 및 연체금은 소송을 통해 징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지역구에 유리한 모든 판결의 경우 소송의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3.1.8.7 반환 수표

어떠한 이유로든 고객 계정의 납부금에 대한 고객 수표가 고객 은행에서 결제되지 않고 재예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표의 금액과 \$35.00의 반환 수표 서비스 수수료가 고객 계정에 부과되며 고객은 5일 이내에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납부가 5일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부 기간을 지난 전체 금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위 섹션 3.1.8.2에 따라 미납에 대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해당하는 연체금 납부 또한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1999년 2월 16일 결의안 312, 섹션 1로 수정, 2020년 1월 21일 결의안 457로 수정)

3.1.8.8 불안전 기구 및 교차 접속

다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기구나 전기 기구가 사용 중인 모든 부지에는 수도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 주 정부 보건국 표준을 위반하는 교차 접속이 있는 모든 부지에는 수도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3.1.8.9 사기 또는 오용

지역구를 사기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3.1.8.10 미준수

수도 서비스에 대한 지역구의 규칙 및 규정 중 어떠한 조항이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3.1.8.11 선취특권 기록

현재까지 누적된 연체금과 모면체료 및 기타 요금의 진술서가 여기에서 설명된 것처럼 준비된 경우 이러한 진술서는 기록되며, 기록된 이후에는 공공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동일한 문서가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선취특권은 현재까지의 요금 및 연체금이 전체 납부되거나 적용되는 부동산이 선취특권을 만족하기 위해 매매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미납 기간 동안에는 최소 요금이 누적됩니다 . 진술서에는 카운티 감정사의 평가 부동산 지번,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 및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주소, 기록 날짜까지 누적된 요금 및 연체료 금액 및 이러한 선취특권 제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주 정부 수도 법령 섹션이 포함됩니다. 진술서는 지역구 일반 관리자가 서명하며 관리자의 서명이 인정됩니다. 진술서는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 관리자에게 제출되며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판결 요지문과 동일한 효력, 효과, 우선순위 및 지속 기간을 갖게 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1월 19일 결의안 245로 수정.)

3.1.8.12 다가구 구조 및 이동 주택촌에 대한 서비스 중단

지역구에서 모계량기를 통해 다가구 거주 구조 또는 이동 주택촌에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의 기록상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적시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지역구에서는 본 섹션 3.1.8의 조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는 계정에 대한 요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통지를 통해 서비스 사용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점을 알릴 선의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통지는 또한 한 명 이상의 실제 사용자가 전체 계정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며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지역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연체 계정에 대한 요금 지급 없이 실제 사용자에게 지역구의 수도 서비스 지속을 위한 조정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최소한 지역구에서는 (1) 실제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이 수도 서비스에 대한 지역구 규칙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한다는 동의와 (2) 지역구에서 결정하는 금액대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2개월간의 평균 청구 금액과 동일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역구 일반 관리자가 만족할 정도로 해당 실제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평균 월 청구액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1982년 3월 11일 결의안 200, 1989년 9월 24일 276으로 수정.)